

시민과 과학을 잇는 동아시아 해양환경 보전운동!

#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2010년 제1차 정기총회

안건 회람

- 일시 : 2010년 2월 26일(금) 오후 7시
- 장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이마트 회의실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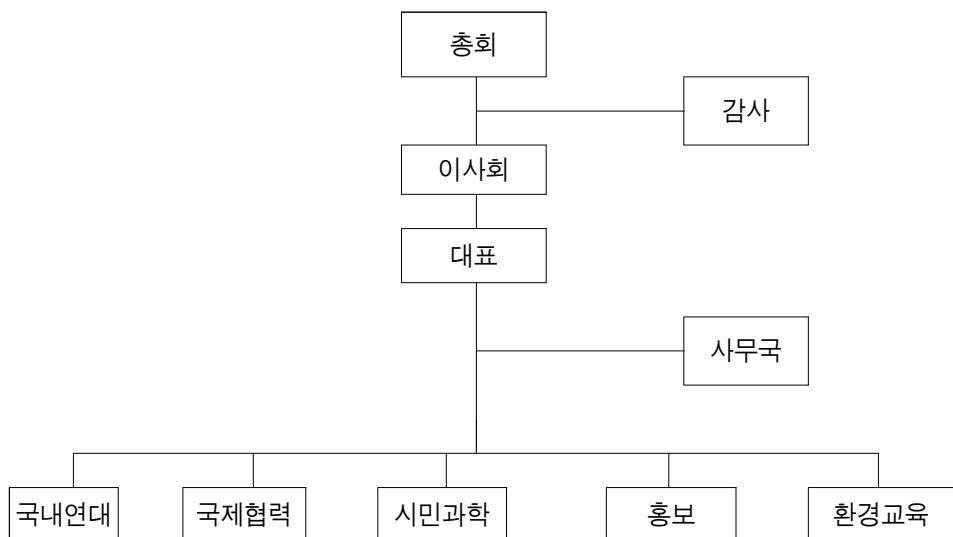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 안 건 자 료 목 차

조직도 및 임원명단 .....	4
연혁 및 활동 일지 .....	5
제1호안 감사 보고 .....	6
제2호안 2009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8
일본 바다쓰레기 서밋 시모노세키 · 나가토회의 참가보고서 .....	9
결산서 .....	13
제3호안 2010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14
2010년 주요 사업 계획안 .....	15
첨부1. 한국 ICC 10주년 기념 사업 추진 계획 .....	22
첨부2. 해양쓰레기 클리어링하우스 구축 기획 .....	24
※ 정관 .....	26

## ■ 조직도 및 임원명단



대 표 : 홍선욱

감 사 : 한동욱, 홍수연

국내연대이사 : 조동오

국제협력이사 : 강대석

시민과학이사 : 장용창

홍 보 이 사 : 시지훈

환경교육이사 : 이인식

사 무 국 장 : 이종명

명 예 이사장 : 로라킴

## ■ 연혁 및 활동 일지

2009. 10. 9. 창립발기인총회 개최(경남 창원 예다원, 발기인 10명)
2009. 10 16~18. 일본 바다쓰레기 서밋 시모노세끼 · 나가토 회의 활동
2009. 10. 27. OSEAN 카페 개설
2009. 11. 2.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K21) 공청회 토론자 참가
2009. 11. 4. NHK 돛토리현 지국 해양쓰레기 특집 인터뷰
2009. 11. 5~6. YSLME/YSESP 이해당사자역량강화 공동 워크숍 참가
2009. 12. 3.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설립추진 회의 자문
2009. 12. 8.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교육 자문
2009. 12. 19. 제1차 이사회 및 한국ICC 10주년위원회 준비회의 개최
2009. 12. 21~22. 연안습지CEPA워크숍 및 인식증진종합계획최종보고회 참가
2009. 12. 26~27.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한일심포지엄 참가
2009. 1. 12.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2010년 사업 추진업무협의
2010. 1. 13. 통영RCE 시민교육분과위원회 가입
2010. 2. 1 법인 설립 인가 신청
2010. 2. 2~3. 습지의 날 기념 행사 연안습지 CEPA 포럼 토론 참가
2010. 2. 4. ERP(ECOUNT) 교육 및 시행

## **제1호안 감사 보고**

## 감사보고서

본 감사인은 2010년 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수지결산서, 현금흐름표 및 그 증빙 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2009년 재무제표는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와 현금흐름의 내용을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홍 수연 (인)

감사 한동욱 (인)

**제2호안 2009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일본 바다쓰레기 서밋 시모노세키·나가토회의 참가 보고서

## □ 개요

- 일시: 2009년 10월 16일(금) ~18일(일)
- 장소: 시모노세끼 MESSE
- 주최: 시모노세끼 시, 나카토 시, JEAN/ 클린업전국사무국
- 후원: 필립모리스 재팬 주식회사, 지구환경기금, 하천환경관리재단,  
전국모타보트경주시행자협의회
- 사무국: JEAN/클린업전국사무국

## □ 개최 취지

- 2000년부터 토비시마, 쓰시마, 오끼, 시레토코, 사도, 도바(2008) 등에서 매년 개최해온 ‘바다쓰레기서밋’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로 고통 받는 지역의 현황 등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해양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왔음.
- 그러나 행정기관의 협조 등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 NGO(한국 포함), 연구자(한국포함), 관계성청 담당자 및 해안 표착 쓰레기 피해 지역 주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해안 쓰레기 표착현상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여 해양 쓰레기의 해결 과제 추출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의장을 마련하고 2009년 제정된 일본의 해안표착물처리추진법(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에 있어서의 양호한 경관 및 환경 보전에 영행을 미치는 해안표착물등의 처리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한국 참석자의 의견 및 자문을 수렴코자 [2009 일본 바다쓰레기 서밋 시모노세끼 나가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토의의 성과와 관계성청의 동향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구체적인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코자 함.

## □ 일정 개요

10월 15일 한국-시모노세끼 이동

10월 16일 한일 양국 NGO 포럼 및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

10월 17일 전체회의

10월 18일 생태관광, 시모노세끼- 한국 이동

## □ 세부일정 및 내용

일정		내용
첫째날	10월 16일(금) 08:30 접수개시 09:00~11:50 12:50~18:00	◎ NGO 포럼 회장: 해협 메세 시모노세끼 국제회의장 · 한일의 NGO/NPO별 활동보고 (도시락 점심) 해안표착쓰레기조사(ICC)와 청소활동 (버스이동) ◎ 현장조사 나가토시 油谷大浦해안
	18:30~21:00	교류회 (동경 제1호텔시모노세끼 083-233-7111)
둘째날	10월 17일 (토) 08:30 접수개시 09:00~09:40	◎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전체토의 회장: 해협 메세 시모노세끼 이벤트홀 · 제1부 오프닝 1. 개최인사, 내빈인사, 축사소개 2. 개최취지 및 경과보고 3. 첫째날의 연안표착 쓰레기 조사와 청소결과보고 등
	09:45~ 11:45	· 제 2부 주요주제 토의 테마 국제연대에 의한 해양 쓰레기대책 과제제기, 토의 코디네이터: 藤枝繁 (후지에다 시게루, 카고시마대학수산학부 교수)
	11:45~13:15 13:15~16:45	점심(개별, 전망시설 등의 견학) · 제3부 부주제 토의 테마 해안표착물등 처리추진법에 관해 과제제기, 토의 등 코디네이터: 敷田麻美 (시키다 아사미, 북해도대학관광학고등연구센터교수)
	16:45 17:00 종료	◎ 「키타우라선언」 발표 폐회인사
세째날	10월 18일 (일)	◎ 예코투어

참가자(한국측: 14명)

이름	소속	직책
홍선욱	OSEAN	대표
이종명	OSEAN	사무국장
이보경	마창진환경연합	부장
전홍표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	사무국장
이동영	마산지방항만청	담당
이찬원	경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임정빈	RCE 통영센터	지속가능평생교육담당
박정식	인천시해양수산과	환경사무관
복진오	복미디어	감독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
김주	자원순환사회연대	활동가
황철민	한국어촌어항협회	수산문화연구센터장
오소연	PGA습지생태연구소	연구원
목진용	KMI	연구위원

## □ 주요 내용

1. 한일 NGO들의 해양쓰레기 관련 활동을 공유
  - 2002년 이후 해양쓰레기 써밋의 연혁
  - 한국어촌어항 협회,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PGA습지생태연구소, 야베가와(시부천)를 잇는 사람들, 물가에서 노는 사람들(나카츠 갯벌 회복 모임), 환경국제연구회(중국해안 클린업 및 조사 활동 보고), 몽골의 쓰레기 문제 소개, 자원순환사회연대, 마산만특별관리 해역 민관산학협의회, NPO 전국물환경교류회
  - OSEAN의 창립과 활동방향, 국제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바다쓰레기 시민포럼제안 (이종명 사무국장)
2. 해안 표착쓰레기조사와 청소활동 -나가토시 油谷大浦해안
3.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국제협력 방향 제시 (홍선욱 OSEAN 대표)
4. 일본 해안표착쓰레기처리추진법의 제정 이후 환경성과 NGO, 지자체에게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소개 (목진용박사 KMI)

## □ 소요예산

- 항공료, 체류비 등 전액 주최측 지원

## □ 평가

- OSEAN 첫 공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활동의 국제적 홍보
- 시민사회의 국제협력의 방향에 대한 진일보한 대안 제시
- 일본 내 해안표착쓰레기 처리법의 주요 내용 파악
- 일본 지자체 공무원, 시민들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증진 기회 제공
- 한국측 참가단 내 공감 확산으로 OSEAN 연대세력 확보

# 결산서

□ 2009년 수지명세서

관	항	목	금 액	예산
회비	회비	월회비	423,615	-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3,000,000	-
기타수입	기타수입	잡수입	13,859,727	20,000,000
수입합계(A)			17,283,342	20,000,000
인건비	상근자	사무국장	4,000,000	4,000,000
운영비			4,164,350	
	사무실 운영비		2,150,000	2,300,000
		사무실 임대료	1,350,000	
		차량유지비	800,000	
	제세공과		924,650	1,000,000
		사무실 관리비	175,310	
		사무실 가스비	27,220	
		수수료	722,120	
	물품구입비		455,610	600,000
		사무실 용품비	215,610	
		물품장비구입비	240,000	
	후생복지비		634,090	700,000
		중식비	494,090	
		특근매식비	140,000	
	경비		320,580	500,000
	회의비	회의비	120,000	200,000
	교통통신비	정보통신비	200,580	300,000
지출합계(B)			8,484,930	
총계(A-B)			8,798,412	2010년으로 이월

**제3호안 2010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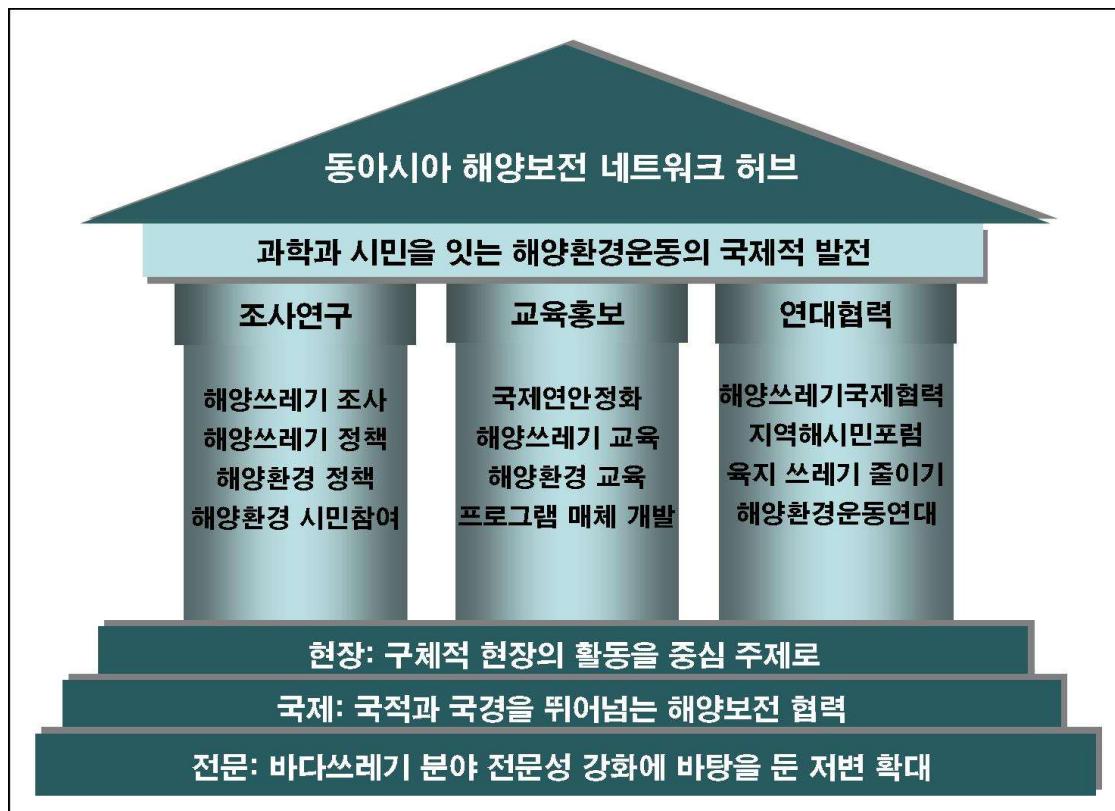
# 2010년 주요 사업 계획안

## □ 사명

과학과 시민을 잇는 동아시아 해양환경 보전운동

## □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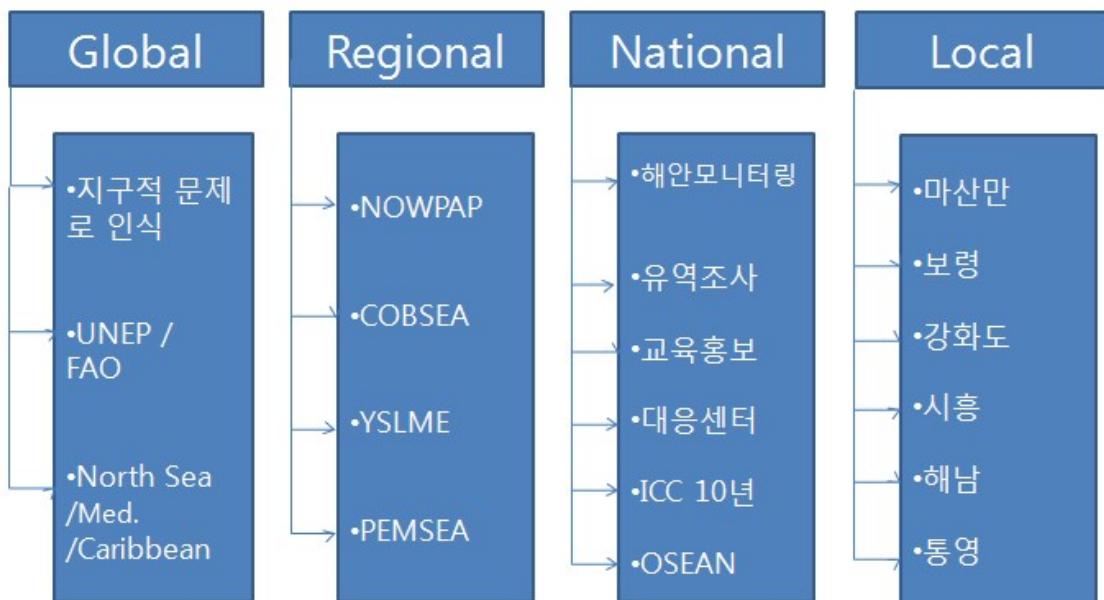
생명 참여 창조 과학 연대



## □ 비전

동아시아 해양환경보전 네트워크 허브

# 해양쓰레기 활동의 현황분석



## □ 2010년 목표

ICC 10년, 해양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적 인식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다.

## □ 주요 사업

### ○ '한국 국제연안정화 10주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

- 2010년 한국 ICC 행사 조직
- 한국 ICC 10년 사업

### ○ OSEAN의 조직의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 법인 인가 및 등기 완료
- 회원 확대 및 관리 체계화

### ○ 범국민적 해양쓰레기 교육홍보 기반 마련

- 학생대상 해양쓰레기 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 어업인 대상 교육 강사 양성
- 해양쓰레기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 해양쓰레기 시민조사

- 해양쓰레기 시민모니터링
-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 해양쓰레기 생물피해 시민 조사

○ 국내연대

- 통영 RCE 연대 사업
- 시민 해양환경운동 지원

○ 국제협력

- 동아시아 바다시민포럼 운영
- ICC Conference 참가
- 한일 연대 사업

## □ 사업별 추진 계획

### ○ 법인 인가 및 등기 완료

- 2월 중 국토해양부 법인 설립인가 취득
- 3월 중 등기 완료

### ○ 한국 국제연안정화 10년 기념사업

- ICC를 범국민적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중사업으로 추진
- '한국 ICC 1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운영
- 주요 사업과 사업내용은 첨부1. 계획서 참조

### ○ 해양쓰레기 교육홍보 방안 연구 및 자료 개발

- 어업인, 학생 해양쓰레기 교육 자료 개발 및 지도자 교육

### ○ 홈페이지 구축

- 해양쓰레기 정보 클리어링 하우스 국문과 영문으로 구축, 운영

### ○ 동아시아 바다 시민포럼 운영

- 정기 온라인 세미나 개최
- 국내는 실시간 화상 회의로 진행, 국제는 화상회의 진행 후 영어 클리어링 하우스 링크 및 피드백 수렴

### ○ 뉴스레터 발간

- E-mail 뉴스레터 발간(분기별)

## □ 2010년 수지계획안

### ○ 총괄표

수입			지출			
항	목	금액(원)	항	목	금액(원)	
사업수입	교육사업	100,000,000	운영비	임대료	6,000,000	
	조사사업	50,000,000		수도광열비	720,000	
	ICC10주년	100,000,000		도서인쇄비	600,000	
	소계	250,000,000		물품구입비	2,400,000	
회비	회비	24,000,000		통신비	1,200,000	
	소계	24,000,000		국내여비	2,400,000	
기부금	기부금	15,000,000		업무추진비	3,600,000	
기타수입	이월금 등	13,920,000		후생복리비	6,000,000	
				소계	22,920,000	
			인건비	사무국장	30,000,000	
				연구원	15,000,000	
				소계	45,000,000	
			사업비	교육사업	90,000,000	
				조사사업	30,000,000	
				ICC 10주년	80,000,000	
				자체사업	20,000,000	
				소계	220,000,000	
			예비비	이월금 등	15,000,000	
합계		302,920,000	합계		302,920,000	

○ 수입(단위:원)

항	산출근거				금액
	목	내용	단가	횟수	
사업수입	프로젝트	해양환경교육	100,000,000	1회	100,000,000
		해양쓰레기조사	50,000,000	1회	50,000,000
		ICC 10주년	100,000,000	1회	100,000,000
	소계				250,000,000
회비	회비	월 회비	2,000,000	12월	24,000,000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15,000,000		15,000,000
기타수입	기타	이월금 등	13,920,000		13,920,000
합계					302,920,000

○ 지출(단위: 원)

항	산출근거				금액
	목	내용	단가	횟수	
운영비	임대료	사무실 500,000	500,000	12월	6,000,000
	수도광열비	전기료 50,000 상하수도 10,000	60,000	12월	720,000
	도서인쇄비	도서구입 50,000	50,000	12월	600,000
	물품구입비	사무용품 등 200,000	200,000	12월	2,400,000
	통신비	전화료 70,000 인터넷 30,000	100,000	12월	1,200,000
	국내여비	국내 200,000	200,000	12월	2,400,000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관리 등	300,000	12월	3,600,000
	후생복지비	식비, 교통비 보조 300,000 사회보험 200,000	500,000	12월	6,000,000
	소계				22,920,000
인건비	사무국장	200만원*15회 (상여금 200%, 퇴직금 100%)			30,000,000
	연구원	100만원*15회 (상여금 200%, 퇴직금 100%)			15,000,000
	소계				45,000,000
사업비	사업경비	교육사업	사업 직접비		90,000,000
		조사사업	사업 직접비		30,000,000
		ICC 10주년	사업 직접비		80,000,000
		자체사업	워크숍, 세미나 등		20,000,000
	소계				220,000,000
예비비	예비비	이월금 등			15,000,000
합계					302,920,000

# **첨부1. 한국 ICC 10주년 기념 사업 추진 계획**

## **□ 배경**

- 한국에서 2001년 시작된 국제연안정화(ICC) 행사가 2010년으로 10주년 맞음.
- 2010년 NOWPAP ICC 행사 한국 개최 예정
  - 해양쓰레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ICC 행사의 유용성이 인정되어 UNEP 등에서 ICC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권고
  - 한중일러 4개국이 회원인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 (NOWPAP)에서도 지역해 해양쓰레기 사업 MALITA와 RAP/MALI에서 ICC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고, 각 국가별 활성화 지원과 국제협력 추진을 결정
  - 관련 정부간 회의에서 2010년 NOWPAP ICC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NOWPAP MALITA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부산에서 'NOWPAP 해양쓰레기 워크숍 및 ICC 캠페인'이 개최된 바 있음.

## **□ 한국 ICC 10주년 기념사업 주요 내용(안)**

- (주관) 바다쓰레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 (주관) 한국 국제연안정화 10주년 기념 주간
- (주관) 해양쓰레기 국제워크숍
- (주관) 한국 ICC 10주년 보고서 발간
- (연대) 강 유역 하구 쓰레기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연대) 폐스티로폼 부표 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대) 마산만 유역 바다쓰레기 대응 시범사업

## □ 사업별 내용

- 바다쓰레기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 공동주관: OSEAN, 해양환경관리공단
  - 기간: 2010년 5월 ~ 10월
  - 내용: 바다쓰레기 피해 사진, 홍보용 UCC 등 공모, 시상
- 한국 국제연안정화 10주년 기념 주간
  - 공동주관: OSEAN,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광역시
  - 기간: 2010년 10월 4일 ~ 9일
  - 장소: 인천시 송도컨벤시아
  - 내용: 공모전 수상작 시상, 전시, 재활용 공연 등
- 해양쓰레기 국제워크숍
  - 공동주관: OSEAN,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광역시, NOWPAP, JEAN
  - 기간: 2010년 10월 8일 ~ 9일
  - 장소: 인천시 송도컨벤시아
  - 내용:
    - 한국 ICC 1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 해양쓰레기 대응 국제 동향과 ICC의 역할
    - 동아시아 지역해 시민사회 해양환경 협력의 전개
    - NOWPAP RAP/MALI 추진 현황
- 한국 ICC 10년 보고서 발간
  - 주관: OSEAN
  - 시기: 2010년 12월 말 발간
  - 내용: 한국 ICC 10년 평가와 향후 전망
- 강 유역 하구 쓰레기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사업
  - 공동주관: 자원순환사회연대, OSEAN
  - 기간: 2010년 3월 ~ 12월
  - 장소: 전국 주요 하천과 하구에서 지역 민간단체가 시행
- 폐스티로폼 부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공동주관: OSEAN+ (섭외 중)

- 기간: 2010년 8월

- 장소: 국회

○ 마산만 유역 바다쓰레기 대응 사업

- 주관: 마산만유역관리민관산학협의회, OSEAN

- 기간: 2010년 5월~12월

- 내용: 바다쓰레기 조사, 예방 · 수거 · 처리 시범사업, 홍보 캠페인 등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 한국 ICC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

- 구성: OSEAN, 자원순환사회연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산만협의회, 등

- 역할: 사업 기획, 조정, 협력 증진 등

- 체계: 위원장(ICC 한국코디네이터)-위원회(구성 단체 대표자 및 사업책임자)

- 회의: 수시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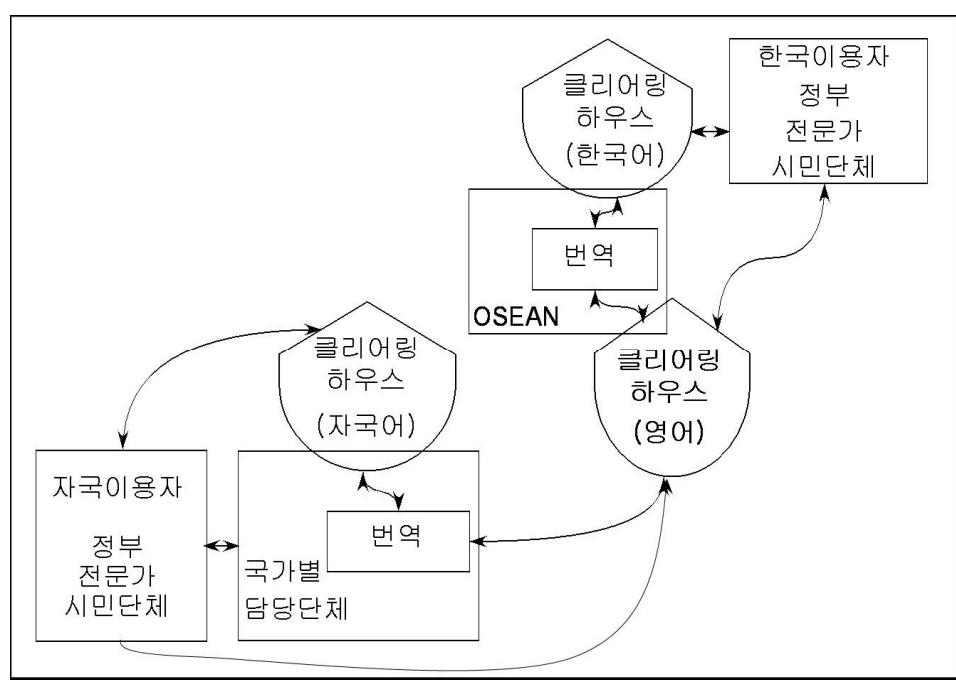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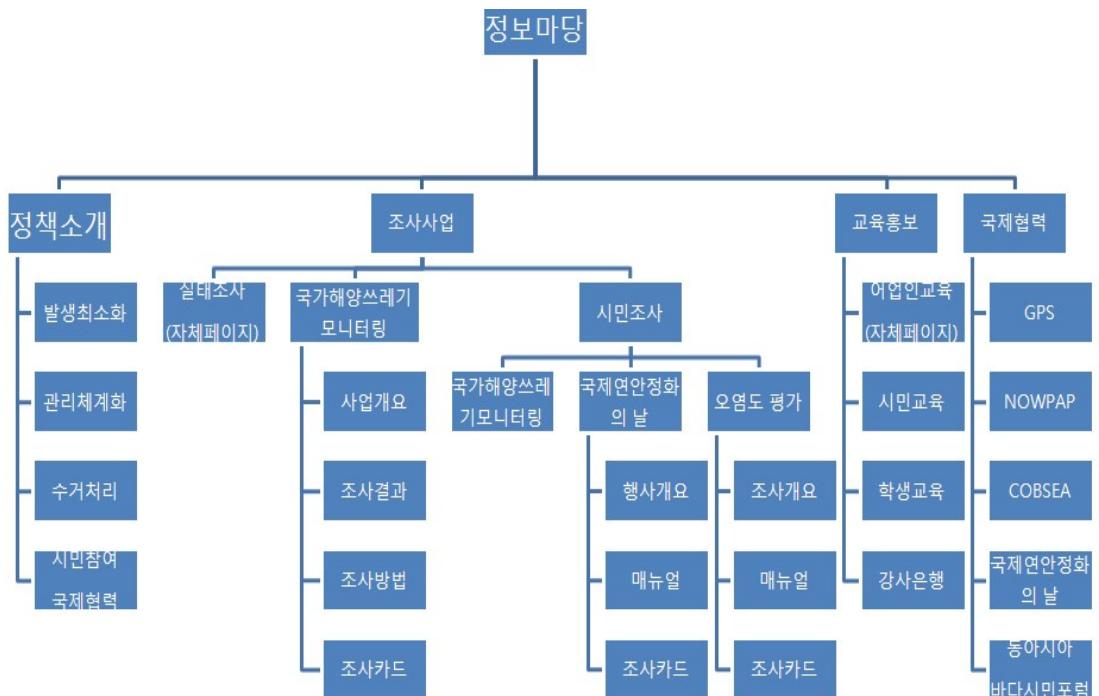
- 전망: 향후 상시적인 연례 ICC 추진 기구로 정착

- zone captain(거점 지역) 발굴

- ※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효율성 추구

- ※ 홍보물에 '2010 한국 국제연안정화 10주년', 후원에 위원회 명시

## 첨부 2. 해양쓰레기 클리어링하우스 구축 기획



▲ 동아시아 해양쓰레기 클리어링하우스 구축 개요

# ※ 정관

##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정관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

제정 2009년 10월 9일

###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국문약자 : 오션, 이하 ‘본 회’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영문약자 : OSEAN)로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과학과 시민 참여에 기반한 해양환경운동을 통하여 국제적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해양환경 조사, 연구
2.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3. 해양환경 정책 연구
4. 해양환경 국제 협력
5. 해양환경 시민운동 지원
6. 해양환경 정보, 자료 제작 배포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조(사무소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국내외에 지부 또는 지역담당자를 둘 수 있다.

###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 6조(회원의 권리)

- ①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출석 · 의결권 · 선거권 ·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자기소견을 주장할 수 있다.

#### 제 7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 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대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본 회의 명예와 공신력을 훼손할 경우

### 제 3장 임 원 과 조 직

#### 제 9조(임원) 본 회에 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 1인
2. 이사 15인 이내(대표 1인 포함)
3. 감사 2인 이내

#### 제 10조(상임이사)

- ①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가 정한다.

#### 제 11조(임원의 임기 등)

- ①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일로부터 3년 후 총회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 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대표 결위 시 이사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총회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4조(고문 · 자문위원 · 전문위원) 대표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고문 · 자문위원 · 전문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 15조(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제 16조(연구기구 · 분과 · 위원회 · 사무국 등)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연구기구, 분과, 위원회,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 제 4 장 총 회

제 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 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 ③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장소와 의안을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

제 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정관변경은 제 33조, 해산에 관하여는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총회 의결권 위임시 서면 또는 팩스, 전자메일 등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20조(대표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 대표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 5장 이사회

제 22조(이사회) 본 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제 23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계획 ·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 결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사무국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및 상정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6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要領)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27조(이사회 의결제척 사유) 대표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2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후원금
3. 기타 수익금

제 2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0조(결산서)

- ① 본 회의 대표는 매 회계 연도 경과 후 당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결산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32조(임원의 보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하고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7장 보칙

제 33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4조(해산)

-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

제 35조(운용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 1조(시행)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준용) 본회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민법상의 규정을 준용한다.